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08436 판결 [환급이행(분양계약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084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1329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배기명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박기웅, 이다희

변론종결 2022. 9. 20.

판결선고 2022. 10. 2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1329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1행 내지 제16행[2.의 나.의 1)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갑 제3,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개인금융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수분양자로 되어 있는 G 명의로 2017. 3. 15. 이 사건 지정계좌에 계약금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G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하단에 표시된 ‘권리의무 승계내역서’에 G이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전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9. 7. 이 사건 전매계약이 제주시에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G 명의로 2017. 3. 15. 이 사건 지정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은 G 명의의 계좌에서가 아닌 B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B이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이 사건 지정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면서 그 송금인을 ‘G’으로 입력한 것에 불과한바, 시행사가 스스로 수분양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을 요청할 당시에는 전매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아닌,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약체결일 또한 2017. 9. 11.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